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아동청소년과)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25
----------	-----

제출년월 : 2025년 3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우리 구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와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개소의 구립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주소	규모	정원	위탁법인	위탁운영기간	개소일
구립석관동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	한천로79길 14-14 (석관동)	132㎡	35명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2020.09.01~ 2025.08.31	12.09.03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운영 일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3.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 ④ 수탁기관은 아동복지관련 사업에 3년 이상의 운영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